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지하철 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2025. 6. 17.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6. 13. 주철현(논현로64길 15-1, 201호) 등 8972명

나. 상정의결

-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2025. 6. 17.)
“ 채택 - 의견서첨부 ”

2. 청원 이유

-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인근은 위례과천선 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인근 역까지 도보나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교통 인프라 미비로 고령자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더불어 극심한 정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는 물론, 안전과 효율적인 이동에도 큰 제약이 있음
- 역삼동 일대는 모아주택 추진과 창업가거리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되고 있으며, 도곡동 삼익·우성·한신 등 대단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인구 유입과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해당 지역에 위례과천선 지하철 역사 신설은 강남구 내 교통 소외지역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생각하여,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에 지하철 역사 유치를 청원함

3. 소개 의견 요지(소개의원 : 강을석, 이도희)

- 본 청원은 위례과천선 노선 발표 후,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인근 지역에 지하철 역사 신설을 요청하는 내용임. 해당 지역은 현재 인근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멀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낮으며, 특히 고령층 및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임
- 최근 역삼동과 도곡동 일대는 모아주택 추진과 창업가거리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를 고려한 선제적인 대중교통 인프라 확보의 필요성이 절실함
- 현재 위례과천선 노선이 해당 지역 인근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지하철 역사 신설을 통해 역삼·도곡동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도시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번 청원은 지역주민 다수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강남구 내 교통 소외 지역 해소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본 청원을 소개함

4. 관련 사업 및 추진 경과

- 사업 명칭: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 사업 목적: 경기 남부권과 서울 강남지역 간 이동 편의성 제고
- 사업 범위
 -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및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일원
 - 총 28.25km(차량기지 1개)
- 사업 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민간제안자: (가칭)위례과천광역철도주식회사)
- 승인기관: 국토교통부

[위례~과천 광역철도 노선도]



○ 추진경과

- 2008. 05.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광역교통 개선대책
- 2016. 06.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국토교통부)
- 2018. 12.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 2019. 10. 광역교통 2030
- 2020. 05. 과천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
- 2021. 06.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국토교통부)
- 2022. 09. 민간투자적격성 조사 의뢰(국토교통부→KDI)
- 2024. 07.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 (대우건설 컨소시엄)
- 2024. 11.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적격성 조사 완료(통과)
- 2024. 1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 2024. 12.~2025. 02.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 2025. 02.~03.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57호)
- 2025. 03.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 2025. 03.~0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 의견수렴(주민설명회 포함)
- 2025. 0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예정)

5. 검토 의견

○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 서울시 남단(서초·강남·송파)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국토교통부에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들과 검토·협의 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타당성(민간투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함.
- 위례~과천 광역철도의 사업구간은 크게 남북축과 동서축으로 구성되며, 남북축은 정부과천청사~압구정, 동서축은 양재시민의 숲~문정법조타운에 이르는 구간이며, 노선 입지 대안은 여러 비교 대상 중 환승거리 최소화가 가능한 대안이 추천된 상태임.

[위례~과천 광역철도 노선 입지 대안 비교]



○ 사업타당성 조사 통과(한국개발연구원)(2024)

- 이 사업은 서울 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 영향권에 있는데 민간투자적격성 조사 중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는 등 위기를 겪었으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보완 과정을 거쳐 2024년 11월 최종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음.

○ BTL 한도액 증액(2024)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소관 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모집(제3자 제안 공고) 등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8,677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방식으로 증액하였음.

○ 국토교통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2025)

- 2025년 2월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였으며, 해당 철도 노선이 도곡동과 역삼동을 통과할 계획임을 확인함.

○ 서울시의회 청원 제기(2025)

- 2025년 5월 도곡1동 주민들은 언덕 등 지형적 요인으로 인하여 초·중·고등학교와 주민이용시설 등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해왔음.
- 김재영 등 6,134명의 청원인은 서울시의회에 위례~과천 광역철도 노선에 (가칭) 도곡공원역을 설치해줄 것을 청원하였음.

○ 강남구의회 청원 제기(2025)

- 2025년 6월 주철현 등 8,972명의 청원인(도곡동·역삼동 주민)은 강남구의회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철도 역사 신규 설치를 희망한다고 청원함.

[위례~과천 광역철도 노선 역사 설치 청원 사유]

- ① 도곡동•역삼동 출퇴근 시간 상승적 교통정체 완화
- ② 도곡동•역삼동 교통난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감소
- ③ 주변 병원·기업 등으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 가능성
- ④ 인근 아파트(도곡 삼익·우성·한신 등) 재건축 추진 유입 인구 수 증가 가능성
- ⑤ 지역주민 고령화에 따른 교통약자 편의성 제고 등

- 이번 청원을 통한 역사 설치 요청지점은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이고, 해당 대상지점 인근의 지하철역과의 대략적인 거리는 각각 역삼역까지 1.0km, 한티역까지 1.1km, 매봉역까지 1.2km, 양재역까지 1.2km, 강남역까지 1.6km, 도곡역까지 1.8km, 선릉역까지 2.1km임.

[위례~과천 광역철도 노선 역사 설치에 관한 청원 요청 대상지]



○ 위례~과천 광역철도 강남구 구간 역사 신규 설치

- 위례~과천 광역철도 노선안을 살펴보면 △해당 노선은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를 통과할 계획으로 보이고, △역사 신규 설치 요청지점으로부터 인근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는 각각 1km 이상이므로 역사 신설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도곡동·역삼동 주민들은 강남구청 미래전략기획단 혁신전략과에 문의 및 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해왔으며, 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에 주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음.
-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광역철도는 표정속도¹⁾가 50km 이상일 것이란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역사 위치와 수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음. 청원을 통한 주민의견이 반영되어 역사 설치가 실현되려면 현재 계획된 노선안에 16개소 정거장 목록에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역사가 포함되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함.
- 역사 위치는 여러 계획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의 추진경과로 미루어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음. 노선 주변 주택지구를 고려한 교통 수요를 면밀하게 반영하여 내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원만히 추진되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BTL 한도액 증액이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철도 역사 명칭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정하되,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 정체성, 지역 위치, 역사적 배경을 두루 반영하는 방향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원만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서 지역 내 교통격차가 해소되고, 생활권 중심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어 주민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함.

1) 표정속도: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

※ 관계 법령 및 계획

청원법 [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제11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이하 “공동청원”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청원인은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한 사람(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제20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을 접수한 후 청원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관계 기관·부서는 회신기간 내에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제37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7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총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집행부 의견(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 위례과천선은 국가 시행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에 포함된 후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받아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2024.11.7.) 상태임
- 현재 역사 위치들은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제3차 제안공고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실시협약 체결 시 노선과 역사 위치가 확정 및 공개 예정임
- 향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역사가 신설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및 사업시행사)에 적극 건의하겠음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위례과천선 역사 유치를 원하는 지역이 강남구에 많으며, 강남을 지역에서만 7곳이며, 특히 개포1·4동 같은 경우 지하철역이 하나도 없다 보니 4곳이 지하철역 유치에 매우 적극적임. 본 청원 채택에 따라 지역별로 청원이 과열 경쟁으로 번지는 부분이 우려됨. 청원 소개 시, 관내 지역 간 갈등 같은 우려가 검토되었나
- 답 변: 개포1·4동 지역도 노선에 따라 역사가 설치될 것으로 생각함. 2025년 2월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도곡1동 주민센터 근처로 노선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른 도곡·역삼동 주민들이 역사 유치를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셨기에 지역주민 의견을 소개함. 위례과천선이 본선과 지선으로 건설될 예정인데, 본 청원은 지선 구간이며 개포1·4동 구간은 본선 구간이라 역사 신설에 상충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함

8. 토론 요지 : “없음”

9. 심사 결과 : “채택-의견서 첨부”

10.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1.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지하철 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2.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지하철 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
및 참고자료

의견서

【경제도시위원회】

□ 청원명 :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지하철 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강남구청장

□ 채택의견

- 본 건은 위례~과천 광역철도 복선전철 노선이 지나도록 계획된 도곡동·역삼동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청원으로, 위례~과천 광역철도 복선전철 노선의 강남구 구간 중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에 역사(驛舍)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임
-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제안,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타당성(민간투자적격성) 조사 후 2024년 11월 최종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음
- 서울시 남단(서초·강남·송파)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일원을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구간은 크게 남북축과 동서축으로 구성되며, 남북축은 정부과천청사~압구정, 동서축은 양재시민의숲~문정법조타운에 이르는 구간이며, 노선 입지 대안은 여러 비교 대상 중 환승거리 최소화가 가능한 대안이 추천됨

-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2025년 2월 공개하였으며
- 해당 철도 노선안을 살펴보면, △해당 노선은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를 통과할 계획이고, △역사 신규 설치 요청지점으로부터 인근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는 각각 1km 이상이므로 역사 신설 필요성이 인정됨
- 김재영 등 6,134명의 청원인은 2025년 5월 서울시의회에 위례~과천 광역철도 노선에 (가칭)도곡공원역을 설치해 줄 것을 청원하고
도곡동·역삼동 주민들을 강남구청 미래전략기획단 혁신전략과에 문의 및 민원을 통하여 역사 신설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 왔으며, 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에 주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음
- 소관 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이 노선 및 역사 결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 집행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이에 본 청원을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이 처리할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함

2025. 6. 17.

청 원 요 지 서

접 수 번 호	2025-02	접수년월일	2025.06.13.
청 원 인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4길 15-1 201호	
	성 명	주 철 현 외 8,971명	
소개의원	강 을 석, 이 도 희	소속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건 명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지하철 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		
소관 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요 지

1.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인근은 위례과천선 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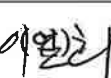
인근 역까지 도보나 버스를 이용해야 하므로 고령자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극심한 정체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이동도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통 인프라의 미비는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는 물론, 안전과 효율적인 이동에도 큰 제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역삼동 일대는 모아주택 추진과 창업가거리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곡동 삼익·우성·한신 등 대단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향후 인구 유입과 대중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례과천선 노선에 해당 지역의 지하철 역사 신설은 강남구 내 교통 소외지역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 형평성 확보와 도시 기반시설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인근에 지하철 역사를 유치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연서자 명부(8,971명) 외 네이버폼 온라인서명부(1,059명) 제출

청 원 소 개 의 건 서

청 원 건 명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지하철 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			
청 원 인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4길 15-1 201호		
	성 명	주 철 현 외 8,971명 (한)	생년월일	1960.09.10
소 개 의 원	강 을  이 도 희 			
소 개 년 월 일	2025 . 6. 13.			

소 개 의 건

본 청원은 위례과천선의 노선이 발표된 이후,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인근 지역에 지하철 역사 신설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지역은 현재 인근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멀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낮으며, 특히 고령층 및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역삼동과 도곡동 일대는 모아주택 추진과 창업가거리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고려한 선제적인 대중교통 인프라 확보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위례과천선의 노선이 해당 지역 인근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지하철 역사 신설을 통해 역삼·도곡동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도시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지역 주민 다수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강남구 내 교통 소외 지역 해소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본 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청 원 서

○ 청 원 건 명 : (도곡1동주민센터사거리 지하철역사 유치)에 관한 청원

○ 청원의 취지

2024년 11월 7일 국토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위례과천선 북쪽방향으로 강남구에서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통과됩니다.

1.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에서 역삼역 또는 한티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20~25분 정도 소요됩니다.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회사원들은 다른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거리보다 더 먼 거리에 있어 지하철 접근이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버스를 이용하여 지하철역으로 가야합니다.
2. 우리 나라는 고령화 사회로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게 편하도록 가까운 곳에 지하철 역이 있어야 합니다.
3.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는 출퇴근 시간에 사방으로 모두 상습적으로 교통이 정체되는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 도곡동 주민들과 역삼동 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역을 유치함으로써 정체를 완화하는 대안이 되고 주민들의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4. 강남세브란스 병원, 주요 기업본사, 청년 스타트업 시설 등등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 이용수요가 증가 됨에 따라 지하철역이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습니다.
5. 현재도 1만 2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있고 도곡 삼익*우성*한신 등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주민의 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기존 위례과천선 노선은 이 지역을 바로 통과하지만, 정차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냥 통과하지 말고 여러 가지 주민 교통 불편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주민 목소리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역사 유치를 통해 강남 일대의 교통의 형평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2025 년 6 월 13 일

위 청원인

주 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64길 15-1 201호

성 명: 주철현 (주) 외 8,971 명

연 락 처: 010-6257-7869

소개의원: 강을석 강을석 이도희 이도희

첨부 : 연서자 명부 1부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의 안 번호	7
-----------	---

2023년 3월 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청 원 자 : 김기창(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외 19명

나. 소개의원 : 김현기의원(국민의힘, 강남 제3선거구), 최호정의
원(국민의힘, 서초 제4선거구, 보건복지위원회)

다. 접수일자 : 2023년 2월 1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2월 2일

마. 상정일자

○ 제316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2023년 3월 7일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포이사거리에 역사를 설치하고, 역사 이름을 “양재천역”으로 해줄 것을 청원
 - 포이사거리는 서초구가 추진하는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이 시작되는 상업지역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글로벌 R&CD 혁신거점 양재 Tech-City 조성계획」에서 지역특화혁신권역에 강남구 개포4동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2020년도에 서초구가 발표한 「첨단 R&D 육성 양재택비계획 재정비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포이사거리에 역사가 설치되어야 함
 - 포이사거리에 역사가 설치되면 서울시가 2015년도에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고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으로 조성된 양재천을 지하철 역에서 내려 바로 걸을 수 있고, 양재천을 사랑하는 서울시민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임. 설치되는 역사 이름으로는, 이제는 없어진 “포이동” 이름을 따르기보다 “양재천역”으로 하는 것이 더욱 지역적 상징성을 갖출 것임

3. 소개의원 청원소개 요지

- 서초구가 추진하는 양재택지지구 단위계획 및 서울시가 발표한 지역 특화혁신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포이사거리에 국가에서 추진 중인 위례과천선의 역사를 설치하고 역사 이름을 “양재천역”으로 해줄 것을 청원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견: 원안가결(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위례과천선은 국가시행 사업으로 국토부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아 민자적격성 조사 중('22.9~)으로 현재는 정거장 위치가 미확정 상태임
- 정거장 위치는 향후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및 제3자공고를 거쳐 다양한 민자계획(안)을 국토부에서 평가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확정 예정
- 정거장 신설 건(정거장명 포함)은 향후 민간사업자와 협상 과정에서 서울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거장이 신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

1) 교통정책과-3328 (2023.02.27.)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청원의 개요

- 동 청원은 서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이 시작되는 상업지역이자 서울시가 발표한 지역특화혁신권역에 포함된 포이사거리 에 국가(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철도 위례과천선 신규역사를 설치하고 역사 이름을 “양재천역”으로 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주민 삶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시민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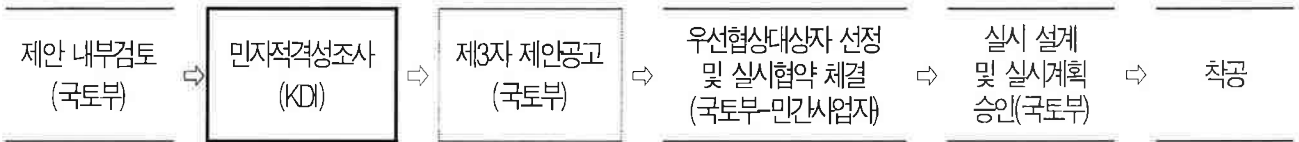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 위례과천선 추진현황 및 계획

- 위례과천선(북정~정부과천청사, 총 연장 22.9km)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과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철도로 제3차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고시된 바 있음
- 위례과천선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21년 말 대우건설이 민자 제안하였고 국토교통부 내부 검토를 통해 '22년 9월부터 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중이며 '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²⁾를 통

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참고1: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참고2: 위례과천선 추진현황

- 노 선 명: 위례과천선(광역철도)
 - 구 간: 북정~정부과천청사
 - 사업내용: 연장 22.9km(복선전철)
 - 사업비: 1조 6,990억원
 - 사업목적: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제고
 - 추진경위
 - '16.06.27.: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국토부)
 - '17.02.28.~03.1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건의(+추가건의)(사→국토부)
 - '19.10.: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사→국토부)
 - '20.05.: 과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위례과천선 포함(국토부)
 - 위례과천선 종점 연장(경마공원→정부과천청사), 광역교통개선대책비 4,000억원 반영
 - '21.07.: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국토부)
 - 사업구간: 북정~정부과천청사(22.9km), 총 사업비: 1조 6,990억원
 - '21. 말: 위례과천선 민자제안(대우건설 →국토부)
 - '22.09.: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국토부 → KDI)
- ※ 민자제안노선의 정거장, 경유지 등은 대외비로 비공개상황

2)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국토교통부('23.1.3.) P.15

-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출퇴근 시간단축: (수도권 광역) 대곡소사선·별내선 개통, 대장흥대선 및 위례과천선을 본격화하는 한편, 서울 5호선 연장 등 사업화 추진

■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 관련

- 위례과천선은 신규 광역철도망 확대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선으로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으며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 중인 광역철도사업임
- 동 청원의 요지대로 강남구 개포동·서초구 양재동 경계에 위치한 포이사거리는 서울시 「양재 AI 혁신지구(舊 글로벌 R&CD 혁신거점 양재 Tech-City조성계획)」³⁾ 및 서초구 「첨단 R&D육성 양재택지계획 재정비안」⁴⁾에서 발표한 위치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이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포이사거리가 인접해 있는 강남구 개포4동 주변 500m 인근에는 지하철역이 없는 철도 사각지대임을 고려할 때 위례과천선 내 포이사거리 역사 신설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위례과천선은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중이고 향후 민자적격성 통과 및 제3자 제안공고 이후 다양한 민자 계획안에 대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최종 노선이 확정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청원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위례과천선과 관련하여 현재 과천시, 서초구, 강남구 등에서 역사 신

3) 바이오AI산업과-양재AI 혁신지구 개발 육성('21.12.21.)

4) 서울 서초구, 첨단 R&D육성 '양재택지계획재정비안' 공고('20.10.21.)

설과 관련된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⁵⁾에서 광역철도의 표정속도가 50km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모든 역 신설시 이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장래의 수요증가 및 철도 사각지대 여부 또한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9조제2항에서 광역철도의 경우 역명 제정⁶⁾시 관할 자치구가 둘 이상인 경우 서울시의 의견 조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포이동⁷⁾”이 '08년 개포동으로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양재천역”을 역명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4.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6)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9조(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절차)

제9조(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 노선 및 역명 제정방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11조에 의한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 제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과 관련된 행정구역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철도운영자, 철도건설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가 제2항에 따라 역명의 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역명 제정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거나, 필요시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도록 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역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7) “포이동”: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던 동으로 2008년 1월1일에 개포동과 통합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의견서 : 붙임1 참조

[붙임1]

채택의견서

□ 청원명 :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에 관한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교통정책과)

□ 채택 의견

○ 동 청원은 서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이 시작되는 상업지역이자 서울시가 발표한 지역특화혁신권역에 포함된 포이사거리에 국가(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철도 위례과천선 신규역사를 설치하고 역사 이름을 “양재천역”으로 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주민 삶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시민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 위례과천선은 신규 광역철도망 확대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선으로 2016년, 2021년 두 차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21년 말 대우건설이 민자 제안하였구 국토교통부 내부 검토를 통해 '22년 9월부터 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중이며 '23년 국토

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청원의 요지대로 강남구 개포동·서초구 양재동 경계에 위치한 포이사거리는 서울시 「양재AI 혁신지구(舊 글로벌 R&CD 혁신거점 양재 Tech-City 조성계획)」 및 서초구 「첨단 R&D육성 양재택지계획재정비안」에서 발표한 위치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이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포이사거리가 인접해 있는 강남구 개포4동 주변 500m 인근에는 지하철역이 없는 철도 사각지대임을 고려할 때 위례과천선 내 포이사거리 역사 신설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위례과천선은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중이고 향후 민자적격성 통과 및 제3자 제안공고 이후 다양한 민자 계획안에 대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최종 노선이 확정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9조제2항에서 광역철도의 경우 역명 제정시 관할 자치구가 둘 이상인 경우 서울시의 의견조회를 거치도록 하고 “포이동”이 '08년 개포동으로 통합되었다는 점 또한 “양재천역”을 역명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7	접수연월일	2023. 2. 1
청원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성명	김기창 외 19명	
소개의원	김현기, 최호정	소속위원회	운영, 보건복지
건명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	교통		
<p>○ 포이사거리에 역사를 설치하고, 역사 이름을 “양재천역”으로 해줄 것을 청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이사거리는 서초구가 추진하는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이 시작되는 상업지역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글로벌 R&CD 혁신거점 양재 Tech-City조성계획」에서 지역특화혁신권역에 강남구 개포4동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2020년도에 서초구가 발표한 「첨단 R&D 육성 양재택비계획 재정비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포이사거리에 역사가 설치되어야 함. - 포이사거리에 역사가 설치되면 서울시가 2015년도에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고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으로 조성된 양재천을 지하철역에서 내려 바로 걸을 수 있고, 양재천을 사랑하는 서울시민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임. 설치되는 역사 이름으로는, 이제는 없어진 “포이동” 이름을 따르기보다 “양재천역”으로 하는 것이 더욱 지역적 상징성을 갖출 것임.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5. 2



국 토 교 통 부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경기 남부권과 서울 강남과의 연결 교통수단 부족으로 출퇴근 시간 및 지하철 혼잡을 증가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와 공공주택지구인 과천시구 개발로 인한 경기 남부권 교통 혼잡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의 철도교통 환경개선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서울 남부와 경기 동남부 지역간 이동시간 단축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으로 과천대로 및 서울도시철도 2, 4호선 혼잡구간 혼잡을 완화 효과를 도모
- 출퇴근 이용객의 교통복지를 증진하며, 공공주택지구인 과천시구 입주에 맞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등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 본 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철도)에 대한 민간투자 제안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함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 시기
가. 도시의 개발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 부문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9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를 통지하기 전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1.2.2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시행예정임

〈표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사업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1.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1.3.1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1.3.2 구성목적 등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정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대안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나. 환경영향평가

-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 승인기관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정내용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1.4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 2008.05. :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광역교통 개선대책 포함
- 2016.06.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함
- 2018.12. :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포함
- 2019.10. : 광역교통 2030 포함
- 2020.05. : 과천시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포함
- 2021.06.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함
- 2024.07. :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
- 2024.11. :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 2024.11.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 2024.12.~2025.02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 2025.02.~03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5.03.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 제출
- 2025.03.~0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 의견수렴(주민설명회 포함)
- 2025.0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예정)

제2장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환경보전목표 설정

- 환경보전목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환경기준 및 지역환경기준, 생태·자연도, 오염총량 계획, 각 지자체별 환경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표 2-1〉 환경보전목표 설정

항 목		환경보전목표	비 고	
1.자 연 환경의 보 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법정보호종 및 보호가치가 있는 생물종의 보호 ○ 양호한 식생구간(식생보전 I, II등급) 보전	공사시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백두대간 및 정맥 등 주요 산줄기 보전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등 보전 ○ 지하굴착시 지반침하 최소화	공사시	
	자연경관의 보전	○ 자연경관자원 보전 ○ 자연경관 변화 최소화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 차량기지, 공사구간 수계 부유물질 목표농도 준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 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 수질오염총량에 따른 할당부하량 협의	공사시 및 운영시	
2.생 활 환경의 안전성	환경 기준 부합성	대기질 및 악취	○ 공사시(토공사 및 터널굴착시) 및 운영시(환기시설) 환경보전목표 준수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 국가,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수	공사시 및 운영시
		토양	○ 본 계획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 설정 (폐유저장소 인근) ○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폐유저장소 인근)	공사시
		소음·진동	○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 준수 ○ 학교시설(교사 내) 소음 기준 준수 ○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준수 ○ 발파시 소음·진동 규제기준 준수	공사시 및 운영시
		전파장해	○ KBI 연구자료 평가기준 준수 ○ 외국의 전자파 규제(권고)기준 준수	운영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안정적 처리	공사시	
3.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고려한 노선계획 수립 ○ 토지 등 소유자 보상	운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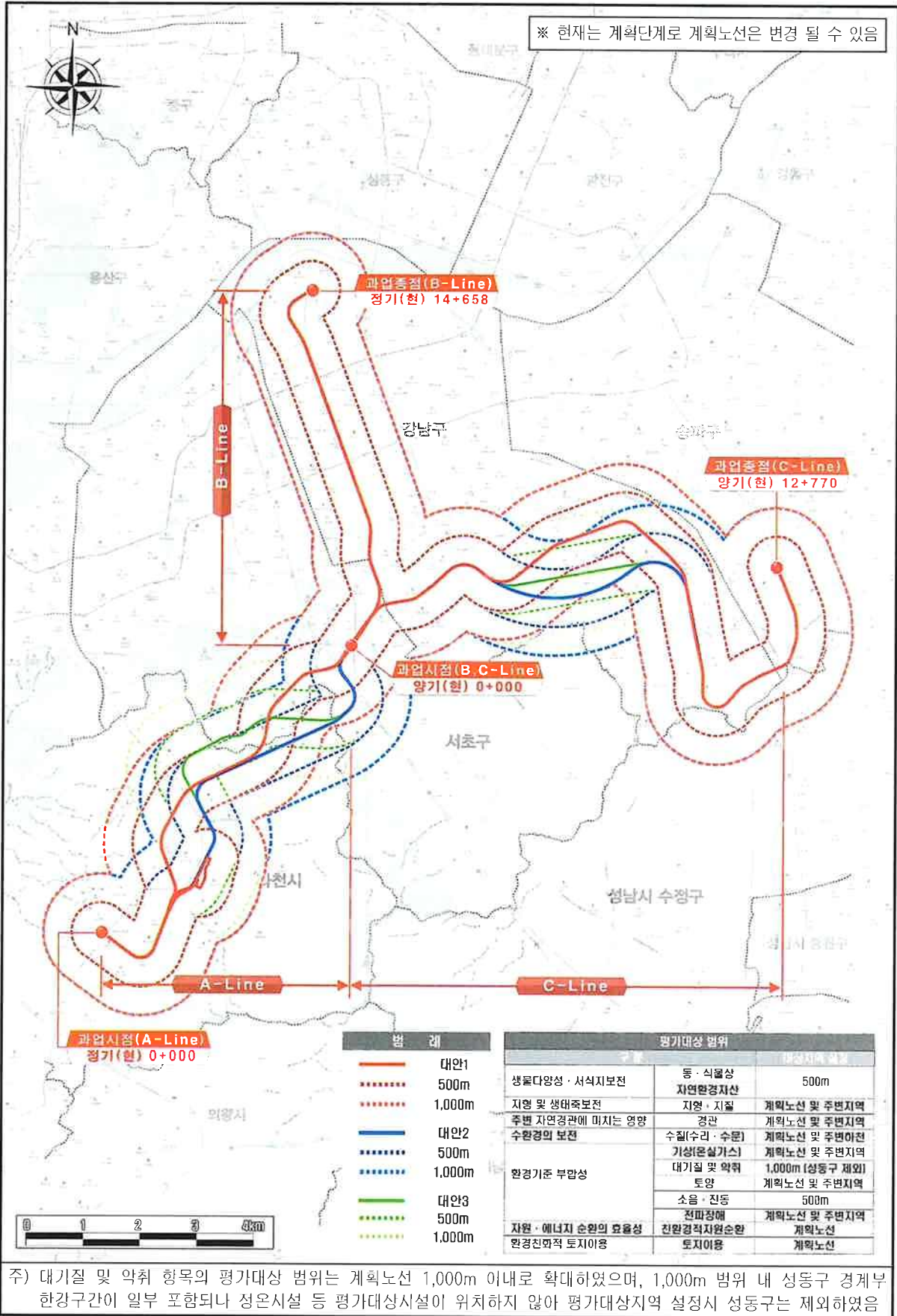
2.2 평가대상지역 설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3-72호」,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01,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함

〈표 2-2〉 평가 대상지역 설정사유

구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 대상지역	대상지역 설정사유
가) 자연 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반경 500m (분류군별 조사 범위는 *주)참조)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현지 및 문헌조사 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계획 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영향예측 · 학술적·문화적, 자연환경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훼손여부
	(3) 자연경관의 보전	경관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지형훼손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 여부 판단 가능지역
	(4) 수환경의 보전	수질 (수리·수문)	계획노선 및 주변 하천 (탄천, 양재천, 막계천, 여의천, 장지천)	·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 등에 영향예측 · 공사시 토공사로 인하여 강우시 토사유입 예측 · 운영시 수질오염총량 검토(한강H, 탄천A)
나) 생활 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계획노선 및 인근 지역의 광역 기상 자료를 분석하여 타 항목의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및 악취	계획노선 경계로 부터 반경 1km*주)참조	·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영향예측 · 운영시 환기구 운영에 따른 영향예측
		온실가스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철도운영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토양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토양오염현황, 공사시 폐유발생에 의한 토양오염예측
		소음·진동	계획노선 경계로 부터 반경 500m 이내	· 공사시 건설장비의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에 대한 예측 · 운영시 열차운행 등에 의한 소음진동 예측
		전파장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열차운행에 따른 전파장애 영향 검토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환경기초시설의 현황조사 및 적정성 검토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노선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발생량 예측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계획노선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변화에 대한 예측	

- 주) 1. 동·식물상 조사범위 :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의 “자연생태환경 분야” 참조 (선사업 기준)
 - 현지조사 범위 : 500m이내(포유류, 조류), 150m이내(식물상 및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상하류 100m(이류, 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광역조사 범위 : 계획노선을 중심으로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기본단위인 9개의 격자를 포함한 지역
 2. 대기질 및 악취 항목의 평가대상 범위는 계획노선 1,000m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1,000m 범위 내 성동구 경계부 한강구간이 일부 포함되나 정온시설 등 평가대상시설이 위치하지 않아 평가대상지역 설정시 성동구는 제외하였음



(그림 2-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2.3 대안의 설정

2.3.1 계획비교

○ 계획 수립시(Action) 및 계획 미수립시(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계획 수립시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나 장래 유발 교통량 및 현 교통정체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 수립시(Action)인 대안 1을 선정하였음

〈표 2-3〉 계획비교 대안의 비교·검토

구 분	대안 1(계획 수립시(Action))	대안 2(계획 미수립시(No Action))
사 업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지구 과천지구, 주암지구 개발에 따라 경기남부권 교통혼잡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광역교통서비스 제공 ○ 양재와 수서, 위례를 연결하여 출퇴근시간 혼잡완화 및 이용편이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광역교통서비스 유지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지구(과천지구) 광역교통 인프라 확보를 통하여 입주 여건 개선 ○ 서울남부와 경기 동남부 지역간 이동시간 단축으로 교통편의 제공 ○ 과천대로 및 서울도시철도 2, 4호선 혼잡 구간 혼잡률 완화 ○ 출퇴근 시간 단축을 통한 국민 여가 시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 및 생태계 변화 미약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행으로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 및 민원 발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철도교통망 부족으로 도로 정체 가중, 기존 서울도시철도 2, 4호선 혼잡률 심화 ○ 지역 균형발전 저해
선 정	◎	

2.3.2 입지

○ 계획노선 선형 일부를 조정하여 검토한 결과, 향후 원활한 교통량 수용이 가능하므로 신규 철도망 구축계획에 부합하고 대모산 주변 산림구간(비오톱 1등급) 및 기존 주거지역을 회피할 수 있고 수서역(3호선, 수인분당선, GTX-A)과 환승시설 설치시 환승거리 최소화가 가능한 대안 1을 선정하였음

<표 2-4> 과천문화원~경마공원 구간 검토



<표 2-5> 개포공원~수서역 구간 검토



<표 2-6> 입지 대안의 비교·검토

구 분	대안 1안	대안 2안	대안 3안
노선도	<p>※ 현재는 계획단계로 계획노선은 변경 될 수 있음</p> <p>Legend for A-Line: ○ 장부과천정사-양재시민의숲 ○ 양재시민의숲-임구정 ○ 양재시민의숲-범조타운</p> <p>Legend for B-Line: ○ 관악시정(양기(현)10km000) ○ 과일시정(B, C-Line) 양기(현)10km000</p> <p>Legend for C-Line: ○ 대안1 종점 정기(현)14km656 ○ 대안2 종점 정기(현)15km095 ○ 대안3 종점 정기(현)16m255</p> <p>Legend for D-Line: ○ 대안1 종점 양기(현)12km770 ○ 대안2 종점 양기(현)12km280 ○ 대안3 종점 양기(현)12km410</p>		
노선연장	28.250km	28.200km	28.665km
정거장	총 16개소	총 16개소	총 16개소
공사비	27,312억원	27,287억원	27,300억원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천, 주암, 우면지구 등 장래 수요 발생 지역 경유 ○ 양재시민의숲 지선분기를 위한 입체교차 유리 ○ 수서역 환승시설 설치유리 ○ 기존 도로 하부 통과로 민원 발생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마공원, 양재IC를 경유하는 기존 수요 유입 가능 지역 경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마공원, 서울서초보금자리 인접 통과로 기존 수요 유입 가능 지역 및 장래 수요 발생 가능지역 경유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마공원, 양재IC 등 기존 수요 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 제공 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천지구, 우면지구 등 장래 수요발생지역 미반영 ○ 수서역 환승시설 설치시 환승거리 증가 ○ 비오톱 1등급 하부 통과 ○ 기존 주거지역 하부 통과 민원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천지구 등 장래 수요발생 지역 미반영 ○ 곡선부 증가에 따른 표정속도 저하 발생 ○ 수서역 환승시설 설치시 환승거리 증가 ○ 기존 주거지 하부 통과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
선 정	◎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노선 대안 비교·검토 결과 공공주택지구 과천지구, 주암지구, 우면지구를 포함하고, 개포공원~수서역 구간 대부분 도로 하부로 계획되어 민원발생 가능성이 낮고 수서역(3호선, 수인분당선, GTX-A)과 환승시설 설치시 환승거리 최소화가 가능한 대안 1안이 타당함 		

2.4 평가항목 선정

○ 본 계획과 관련한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함

〈표 2-7〉 평가항목 설정 및 선정사유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선정사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과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환경관계법상의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및 입지규제 저촉여부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 계획수립, 대안노선 비교·검토하여 적정성 검토 필요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자연환경 자산 ○ 계획시행으로 인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의 서식지 및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파악 및 보호종 출현시 보호대책 수립 필요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계획시행시 지형변화에 따른 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자연경관의 보전	경관 ○ 자연경관심의 대상여부 검토 필요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상	
		수환경의 보전	수질 (수리·수문)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점·비점오염원 발생 및 저감방안 수립 필요 ○ 주변 수질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수질오염총량 검토 필요(한강H, 탄천A 단위구역)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 상	○ 타 항목의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및 악취	○ 건설장비 가동 및 절·성토 공사 및 운영시 열차운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저감방안 검토
			온실가스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및 운영시 열차운행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및 저감방안 검토
			토 양	○ 계획시행으로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과의 부합 여부
			소음·진동	○ 건설장비 가동 및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 소음환경기준 등과의 부합성
			전파장해	○ 시설물 운행에 따른 전파장해 검토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	○ 계획수립 시 오수, 폐기물 등 처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 환경기초시설의 연계처리 여부 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수립 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예상		

2.5 평가범위 및 방법

○ 본 계획의 평가항목별 조사 범위 및 예측방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3-73호」를 참고하여 설정하였음

- 조사는 기존 문헌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본 계획시행으로 환경보전대상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예측할 계획임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표 2-8〉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현황조사	영향예측 방법
자연환경의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①조사내용 : 식물상 및 식생, 동물상, 담수생물상, 비오톱,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 현황 ②조사범위 - 식물상 및 식생, 양서파충류, 곤충류 · 계획노선 및 주변 150m - 포유류, 조류 · 계획노선 및 주변 500m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상하류 100m ③조사방법 : 기존자료,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 조사주기 : 전략 1회, 환경 2회	○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에 대한 영향검토 ○ 분류군별 서식처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검토 ○ 토사유출에 따른 담수생물상 영향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①조사내용 : 지형·지질현황, 지형분석, 특이지형 및 지질노두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검토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훼손여부 검토 ○ 주요 생태축 보전방안 검토
	자연경관의 보전	경관	①조사내용 : 경관 우수지역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을 선정	○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 검토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예측
	수환경의 보전	수질(수리·수문)	①조사내용 : 하천에 대한 환경기준 항목의 현황농도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하천횡단구역 및 주변 하천(탄천, 양재천, 막계천, 여의천, 장지천)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조사주기 : (지표수) 5지점×전략 1회, 환경 2회 (지하수) 3지점×전략 1회, 환경 2회	○ 토공사시 토사유출량, 터널공사시 폐수발생량, 정거장 운영시 오수발생에 의한 영향예측 시행

〈표 계속〉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 평가	현황조사	영향예측 방법
생 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상	①조사내용 : 계획노선 인근 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분석·정리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기상관측자료 조사	○ 기상연보 분석·정리
		대기질 및 악취	①조사내용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원 및 대기오염도 현황, 악취유발시설 현황, 정온시설 분포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반경 1,000m 이내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조사주기: (대기질) 10지점×전략 1회, 환평 2회 (악취) 3지점×전략 1회, 환평 2회	○ 공사시 건설장비에 의 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운영시 차량기지 운영 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 예측 시행
		온실 가스	①조사내용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 가스 배출량 예측
		토양	①조사내용 : 토양오염원, 토양오염도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조사주기: (토양) 3지점×전략 1회, 환평 2회	○ 공사시 발생하는 토양 오염물질 예측
		소음 진동	①조사내용 : 주변 소음현황 및 주요 발생원 조사, 정온시설 분포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 ③조사방법 : 현지조사 -조사주기: (소음진동) 12지점×전략 1회, 환평 2회	○ 공사시 공사장비 및 운영시 열차운행에 의한 소음·진동영향 예측
		전파장해	①조사내용 : 전파장해 유발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 계획의 시행시 전파장해 영향 검토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	①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 계획의 시행시 환경기초 시설과의 연계성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조사내용 : 폐기물, 분뇨 등 발생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중별 폐기물 발생량 예측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①조사내용 : 토지이용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③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	○ 계획시행 전·후 토지이용 변화 검토

- 주) 1. 조사주기에서 “전략”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평”은 환경영향평가
 2. 대기질 및 악취 항목의 평가대상 범위는 계획노선 1,000m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1,000m 범위 내 성동구 경계부
 한강구간이 일부 포함되나 정온시설 등 평가대상시설이 위치하지 않아 평가대상지역 설정시 성동구는 제외하였음

2.6 환경질 등의 조사 항목 설정

○ 현황조사 항목, 지점, 횟수 및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음

※ 환경질 현황조사 계획은 현지 및 문헌조사를 포함한 계획임

〈표 2-9〉 환경질 현황조사 계획(전략 1회, 환평 2회)

구분	조사항목	조사 지점	비고
대 기 질	○ PM-10, PM-2.5, NO ₂ , SO ₂ , CO, O ₃ , Pb, 벤젠(8개 항목) ※ 전략(1일조사), 환평(3일연속조사)	10 (15)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악취	○ 복합악취	3 (5)	악취 공정시험기준
지표수질 (하천)	○ 유량, pH, BOD, COD, TOC, SS, DO, T-P, 총대장균군, T-N, Cd, As, CN, Hg, 유기인, PCB, Pb, Cr ⁶⁺ , ABS(19개 항목)	5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소음진동	○ 소음 및 진동도(2개 항목)	12 (15)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토양	○ Cd, Cu, Pb, As, Hg, Cr ⁶⁺ , 유기인, PCB, CN, 페놀류, BTEX, TPH(15개 항목)	3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지하수질	○ pH, 총대장균군, NO ₃ -N, Cl ⁻ , Cd, As, CN, Hg, 다이아지논, 파리티온, 페놀, Pb, Cr, TCE, PCE(15개 항목)	3	먹는물수질 공정시험기준,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 주) 1. 지하수 조사방법은 지하수 사용용도에 따라 적합한 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할 예정임
 2. “전략”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평”은 환경영향평가
 3. 조사지점은 현지조사 지점이며, ()지점은 문헌조사를 포함한 지점임

2.7 의견수렴 계획

2.7.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의거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p>■ 환경영향평가법</p> <p>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p> <p>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p> <p>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p> <p>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제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p>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p>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및 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계획노선 통과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계획노선이 위치하는 지자체 관내 공람장소를 1개소이상 설치하고, 평가서 초안을 비치하여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공람장소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 공고 및 공람 내용 게시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홈페이지 : 공고 및 공람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나.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공람 기간 내 1회 실시하고, 설명회 장소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는 초안 공고사항에 포함하여 공고 가능)

○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설명회의 개최)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중 략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 관계기관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제출 및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p>■ 환경영향평가법</p> <p>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p> <p>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p>■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p> <p>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p> <p>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

<p>■ 환경영향평가법</p> <p>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p> <p>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p> <p>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p> <p>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p>

2.7.2 환경영향평가

-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p>■ 환경영향평가법</p> <p>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p> <p>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p>
--

<p>■ 환경영향평가법</p> <p>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p> <p>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p> <p>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p>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p>

제3장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3.1 협의회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였음
- 심의안건 :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운영기간 : 2024년 12월 19일 ~ 2025년 02월 20일
- 심의방식 : 서면심의
- 주 관 : 국토교통부
- 위 원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위원장을 포함한 14인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함

〈표 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인원

구분	소속	성명	비고
위원장	[Blank]	김	승인기관
위원		조	승인기관
위원		이	협의기관
위원		박	민간전문가(협의기관 추천)
위원		김	관할 지자체
위원		최	관할 지자체
위원		이	관할 지자체
위원		이	관할 지자체
위원		김 (임)	관할 지자체
위원		김	지방환경관서
위원		김	서울시 주민대표(위원장 위촉)
위원		유	경기도 주민대표(위원장 위촉)
위원		권	민간전문가(시민단체 추천)
위원		김	민간전문가(위원장 위촉)

주) 송파구는 심의위원의 인사발령으로 임○○위원에서 김○○위원으로 변경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알림 및 심의 개최

1. 우리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8조 및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불임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같은 법령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기 위한 서면 심의를 요청하니, '25. 2. 6(목)까지 불임 양식3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양식4 및 5는 '24. 12. 26(목)까지 기한엄수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각 지자체에서 추천하신 주민대표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방안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1부.
 3. 평가준비서 심의의견(양식) 1부.
 4. 정보공개 동의서 1부.
 5. 보안각서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주무관

협조자

시행 철도투자개발과-4533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980

팩스번호 044-201-5596

/ ohsj92@molit.go.kr

/ 비공개(5)

3.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위원장 김○○

평가준비서 심의의견

안전 :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내용은 적정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노선계획은 상위계획 및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함

3. 대안

- 대안검토는 계획의 필요성,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계획노선 전 구간이 지하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사업 특성을 반영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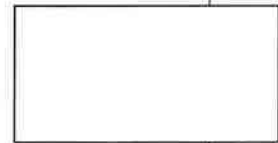
5. 기 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을 평가서에 충실히 반영하고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2025. 2. 20.

위원장

김



평가준비서 심의의견

□ 안건 :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별도 의견 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계획노선 주변으로 보전 및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 분포할 경우, 사업 시행에 따른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대안
 - 계획의 목적, 토지이용현황, 입지 및 주변 환경특성 등을 고려한 대안별 검토가 필요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계획노선은 도심지를 통과하므로 공사 및 운영시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평가항목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5. 기 타
 -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반영 여부를 제시 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025. 2. 27.

심의위원 조



평가준비서 심의의견

안전 :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대안

- 동 사업의 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물(정거장, 환기구, 차량기지 등)에 따른 입지 대안 및 터널굴착, 토공사 등에 따른 수단·방법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여야 함.
- 각 대안은 비교·검토가 가능한 통합자료와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자료(도면, 사업내용 및 환경상 영향 등)로 구분하여 제시

2.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항목별 환경질 측정지점은 주요 시설물(계획노선, 정거장, 환기구, 차량기지 등)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지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영향 예상지점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함.
- 동·식물상 조사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현지 출현종의 출현시기를 고려하되 종다양성이 높은 계절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하여야 함.
- 전기공급시설(변전시설, 송전선로 등) 설치 계획이 포함된 경우, 운영시 해당 시설물 주변(주거지, 학교 등)으로 전·자기 등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 시행에 따른 각 항목별 환경질 조사, 영향예측 시에는 사업부지 주변의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을 누적하여 조사, 예측하여야 함.

2025. 1. .

심의위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이



○ 위원 박○○

평가준비서 심의의견

□ 안전 :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3. 대안

- 의견 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계획노선이 지하 굴착을 통해 개설될 예정인 바 지하수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A, C Line이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관통하여 통과하고 있는바 공사 시 발파에 따른 진동영향과 더불어 정운시설의 직하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 진동영향을 고려하여 노선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 계획노선 인근에 다수의 정운시설이 위치하므로 변전소가 추가 건설되는 경우 추가되는 변전소의 위치를 제시하고 전파방해 항목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5. 기 타

- 의견 없음

2025. 2. 3.

심의위원 박



평가준비서 심의의견

□ 안전 :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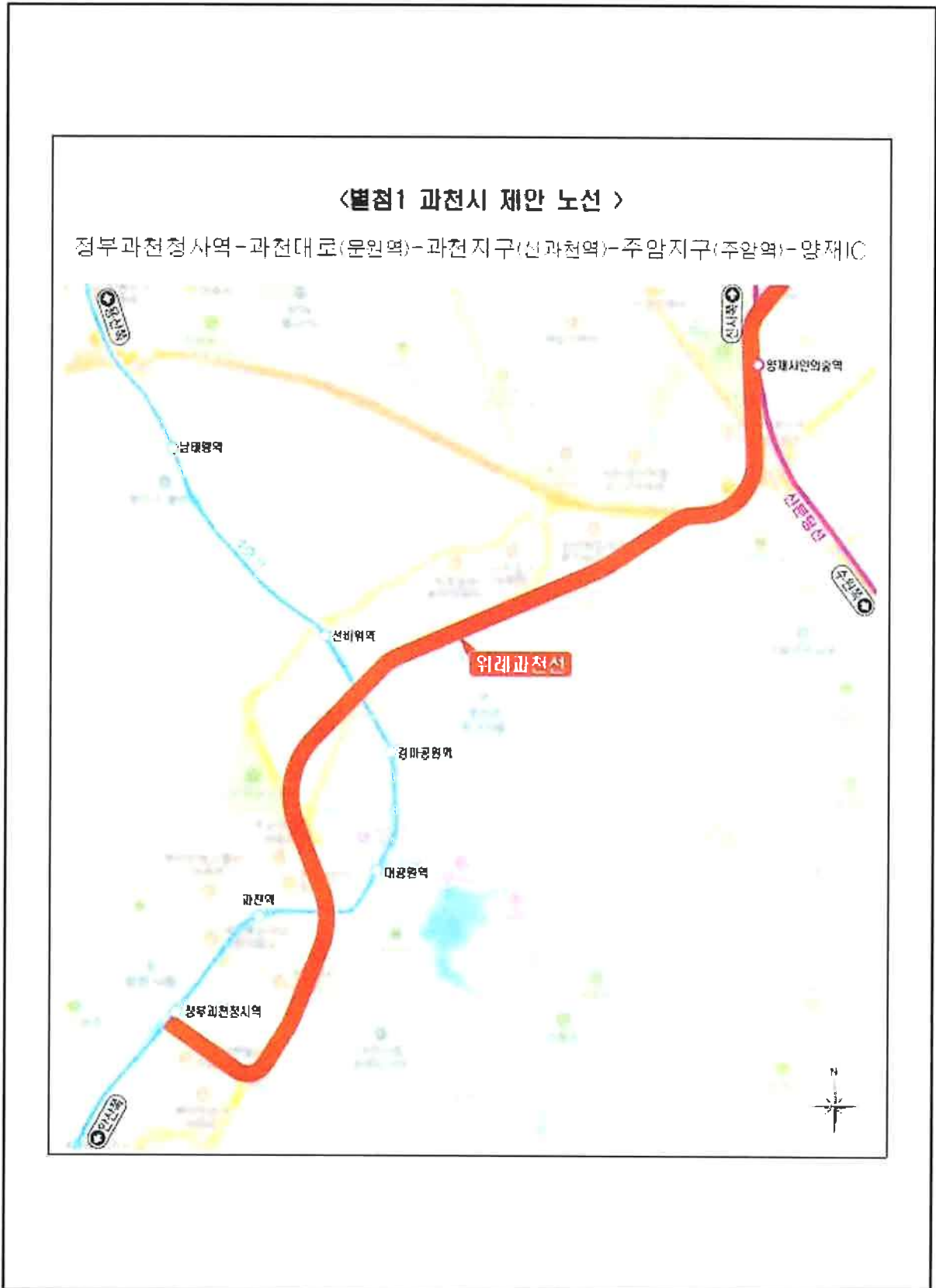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3. 대안(신도시조성과)

- 과천시는 기피시설로 시민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철도차량기지를 관내에 수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강남·서초·송파구)와 주암역 위치를 협의^{2017. 8월}한 바 있으며,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4,000억원 투입 결정으로 위례과천 광역철도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시(주암역, 과천대로역 포함 정부과천청사역 까지 연장)되었음.
- 대안 1안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상이하게 주암지구 경계부를 통과하는 노선이며, 대안 3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와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모두를 패싱(passing)하는 노선으로 국가정책과도 부합되지 않음.
- 대안 3안으로 시행 시 노선에 대한 과천시민의 강한 반발 및 반대가 예상됨에 따라 시의 행정적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위례과천선의 사업 목적에도 반하는 노선으로 판단됨.
- 아울러 임대주택과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대상이 대부분 신혼부부, 청년, 소외계층 등임을 고려하였을 때 철도교통은 필수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탄소중립 정책에도 부합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에 해당됨.
- 따라서 위례과천선은 대안 1안과 대안 2안의 절충 노선으로 정부과천청사·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 주암지구 내 주요도로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과천시 제안노선 : 별첨1

○ 위원 김○○ (2/2)



평가준비서 심의의견

□ 안전 :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설정하였으나 주민 요구가 있을 시, 추가로 대상지역 확대할 것
- 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계획 또는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보전 및 보호지역이 입지했을 경우 대책 필요

3. 대안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초안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를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하고
- 현재 제안하고 있는 노선이 최선의 대안임을 인정할 수 있는 비교 검토 자료 제시
- 성남시 교통량, 주변 도로망 및 철도망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대안 제시 필요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 추가로 평가항목, 범위 등을 확대할 것
- 해당사업의 특성상 지하수 수위 변화와 유출 지하수의 처리, 사토처리장, 도심지역 통과 시 진동피해에 대하여 증점적인 검토 필요

○ 위원 최○○ (2/2)

- 사업 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영향 등 주변 영향에 대한 여부를 분석·제시하고 사업 추진 시 공사 등으로 소음 영향이 예상되므로 주변 현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점평가항목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연환경, 대기질, 소음진동, 악취 등의 계절별 조사와 특히 소음진동, 악취의 영향은 야간 및 심야시간대 예측에 주의하여 작성할 것

5. 기타

- 해당 노선은 위례지역 성남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2025. 1. 24.

심의위원 최



평가준비서 심의의견

안전 :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적정

2. 토지이용 구상안 : 적정

3. 대안

- 대안 1 : 적정

- 대안 2, 3 : 부적정

(우면지구 등 장래 수요발생지역 미반영으로 사업성 저하, 주민반발 극심 등)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적정

5. 기 타

- 위례과천선이 통과하는 서초구 관내 우면동 일대는 우면산에 의한 단절로 사당역(4호선·2호선), 양재역(3호선)방면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며, 지하철역 하나 없는 대중교통 빈곤 지역임

- 또한, 경기도와 서울시의 관문지역으로 지역간 통과교통 집중으로 인해 항상 교통이 혼잡한 상습 정체지역이며, 향후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과천 주암지구, 3기 신도시 과천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도로교통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어, 이 일대 근본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위례과천선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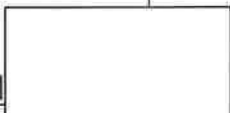
- 선정된 대안1은 선암IC, 태봉로를 경유하는 것으로서, 5개 간선도로, 광역버스 등 29개 노선통과, 철도~도로 연계 최적의 장소임. 다만, 선정된 대안 1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요 교통거점인 4호선 선바위역을 추가 경유할 경우 광역철도와 도시철도와의 철도환승 네트워크 형성으로, 철도이용율 증가 및 본 철도사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아래와 같이 선바위역 추가경유를 검토하여 주기 바람

<대안1> 수정건의안 : 선바위역(환승역) 추가경유

- ① 기 준 : 과천문화원~3기신도시~선암IC~태봉로~양재시민의숲역
- ② 변 경 : 과천문화원~3기신도시~**선바위역**~선암IC~태봉로~양재시민의숲역

2025. 02. 05.

심의위원 이



평가준비서 심의의견

안전 :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별도의견 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별도의견 없음

3. 대안

- 대안 1, 2, 3안 중 산림 구간과 주거지역 하부를 통과하지 않고 기존도로 하부를 통과하는 대안 1이 타당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별도의견 없음

5. 기 타

- 정거장 개수가 A라인은 7.5km에 6개소, B라인은 7.1km에 4개소, C라인은 12.4km에 6개소로 B,C 라인에 정거장이 부족하고 지역별 형평성에 위배됨
- 따라서 B라인은 최소 1개 이상 C라인 최소 3개 이상의 정거장 추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2025. 1. .

심의위원 강남구청 미래교통팀장 이



○ 위원 김○○

평가준비서 심의의견

□ 안전 :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 토지이용 구상안

송과구의 개발계획을 사전 파악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 필요

3. 대안

계획노선 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으나, 향후 계획노선 확정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본 노선은 전구간 지하 통과로 계획되어 공사 시 대부분 지하에서 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굴착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상 작업 시 먼지 및 소음·진동 저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기 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

2025. 2. 5.

심의위원 김



평가준비서 심의의견

□ 안전 :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환경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 평가항목별 영향권 범위설정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2. 토지이용 구상안

- 기존 도로 및 철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
-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 영향을 예측·검토하고 환경적 악영향이 우려되는 구간의 위치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3. 대안

- 대안은 해당 계획의 성격,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개 이상 설정하고, 각 대안의 종류별로 2개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 구상안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대기질, 온실가스) 공사 및 운영 시 대기질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강구,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등을 산정하고 저감방안을 수립·제시
 - 지하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환기소 등)의 주변 지역을 현황조사지점으로 선정
- (수질) 지하터널 굴착에 따른 지하수 영향 및 터널폐수, 토사유출,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주변수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제시
- (소음·진동) 공사(발파 포함) 및 운영 시 주변 정온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제시
 - 발파시행지역 주변 정온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현황조사지점으로 선정하고, 발파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현황조사 지점은 공사·운영 시 영향예측지점,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 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항목별 조사 시기, 조사지점(도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위원 김○○ (2/2)

- (기타) 주변 개발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공사 시기가 중복되는 경우 대기, 소음·진동 등 누적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

5. 기 타

- 문헌자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 문헌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상기 제시된 심의의견 반영여부를 제시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제시

2025. 1. .

심의위원 김

○ 위원 김○○

평가준비서 심의의견

안전 : 위례파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적절히 설정됨

2. 토지이용 구상안

- 별도 의견 없음

3. 대안

-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공사 기간 중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여 불편이 예상되므로 평가 준비서에 제시한 항목별로 예측을 실시하고 적정한 환경영향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함

5. 기 타

- 별도 의견 없음

2025. 2. 11.

심의위원 김



○ 위원 유○○

평가준비서 심의의견

안전 :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입지 및 계획을 검토 바람

3. 대안

-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노선이 선정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도심지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주변 주거지역 현황 등을 반영하여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을 선정한 것으로 판단됨

5. 기 타

-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에 따른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시기 바람

2025. 2 . 4 .

심의위원 유

평가준비서 심의의견

□ 안전 :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도시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계획으로 대기질, 악취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1km로 확대가 필요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를 명시하여야 함
- 계획노선 주변의 보전 및 보호 지역이 입지하고 있을 경우 계획을 수정해야함

3. 대안

- 노선의 비교검토시 환경보전 측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에 섹스홀과 악취관련 평가항목의 추가가 필요하며, 조사주기는 최소 4계절을 계절별로 1회 이상 자료구축이 필요하며, 대기질 및 온실가스 부분은 토공기간 및 토공량과 공중에 근거한 장비투입계획에 근거하여 산출해야하며, 계획 시행에 따른 영향 예측시 계획노선 주변의 확정된 개발계획 등 내용들을 파악하고 본 계획과의 누적영향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기 타

- 협의회 심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대상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생활환경 피해 및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함

2025. 01. 21.

심의위원 권



평가준비서 심의의견

안전 :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대상지역 설정은 사업내용의 특성, 주변 환경현황 등을 고려하였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등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최대한 확대하여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2. 토지이용 구상안

본 계획노선은 전구간 지하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토지이용 측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사료됨

3. 대안

향후 주변 개발계획 및 교통여건 등 제반상황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도심지 내 지하에 조성되는 철도 사업으로 운영시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사시 개착구간 및 터널구간 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공사소음 및 터널폐수 발생 등의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항목에 대한 검토 후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5. 기 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주민의견 수렴 공고·공람 및 설명회시 동 사업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과 향후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2025. 2. 5.

심의위원 김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 9개 공공주택지구 8.6만명 신규 입주 앞두고 선제적 교통대책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7일 과천시,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다.
-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1년 12월 '대우 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6만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
-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됨

담당 부서	철도국	책임자	과 장	문희선 (044-201-3988)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조범현 (044-201-4093)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 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및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일원
- 다. 계획규모 : 연장 총 28.25km
- 라. 계획수립 및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마. 제안자 : (가칭)위례과천광역철도주식회사

2. 공개개요

- 가. 공개기간 : 2025. 2. 26. ~ 2025. 3. 12.(15일간)
- 나.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다. 공개내용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붙임 참고)

3. 의견제출방법

-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 나. 제출방법 : 붙임의 주민의견 제출서 서식으로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에 서면 제출(ohsj92@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심의결과 : 별도첨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044-201-39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

역삼지선

정부과천청사

[지하철역 유치 서명운동 안내]

역삼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칭)역삼도곡역 유치 위원장 주철현입니다.

2024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위례과천선 민자적격성 적정 검사가 통과되었고, 2025년 민자사업 우선대상자 선정(예상)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구)농협사거리((현)도곡1동 주민센터사거리, 일양약품, 하나은행, 농협은행)를 위례과천선 '역삼지선'이 지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지역에 지하철역 유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서명 한 줄이 지하철역 유치를 현실로 만듭니다!

주철현 배상

* 역삼지선 안내(지하철 지나가는 곳)

양재시민의숲역-도곡공원(가칭, 현재 우리가 역사 추진하는 곳)-역삼역 - 언주역 - 학동역 - 을지병원역 - 압구정역
저희는 (가칭)도곡공원을 (가칭)역삼도곡으로 명칭을 바꿔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 참여 방법]

1. 거리 서명운동 부스에서 직접 참여

2. 서명부 참여(뒷면 보시면 서명부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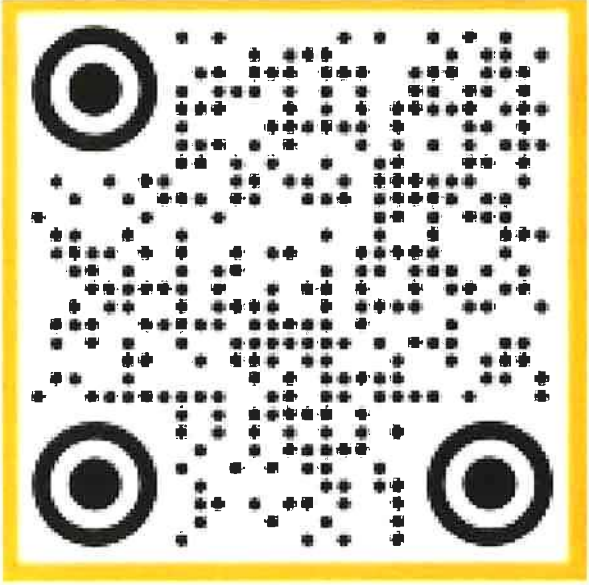
* 주변 지인분, 가족분들 어디 사시든지 관계없이 모두 한 장에 서명 가능합니다.

(제주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등 모두 쓰실 수 있습니다.)

* 제3자 정보제공(서울시, 국토부, 강남구청 등 유치에 필요한 기관 제공) 동의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 가족 지인분들 쓰셨으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명정도 채워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서명부 제출 장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404 노벨프랩 303호, 전화번호: 010.4867.5051



온라인 서명 운동 진행 중
서명▼(네이버폼)

<https://naver.me/GpCbIUz0>